

## 보장비용(주거급여)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46조 및 「주거급여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(주거급여)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0일

노원구



- 공 고 내 용: 보장비용(주거급여) 사전처분통지서
- 공 고 기 간: 2026. 6.10. ~ 2026. 6. 24.
- 공 고 방 법: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
- 공 고 대 상

연번	구분	납부자	생년월일	납부자 주소	납부 (예정)액	납부사유	공시송달 사유
1	기초 주거급여	이**	70.**.**.	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*길 **, ***동 ***호 (월계동, **아파트)	131,540원	부정 수급	폐문 부재

-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복지정책과(02-2116-367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